

제기될 것임.

일곱째, 생활권으로 보아도 현재 군청이 의정부에 소재해 있어 일부 주민이 의정부가 생활권이라고 하나 군청이 본 양주 지역으로 이전시 생활권이 변경 될 것으로 확신하며

여덟째, 우리 양주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 유적을 가졌으며, 고구려 시대의 매초성에서 1466년 조선시대에는 견주군을 오늘의 양주군으로 개칭되어 528년간 이어옴으로 해서 이향심과 지역에 대한 긍지가 높음

아홉째, 본군은 1992년도 기 신청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시 인구 3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형성은 물론 공업단지 유치로 독자적인 개발 여건조성이 확실시 됨.

이상의 반대 이유와 같이 우리군은 평화로와 연계된 경원선 천철 복선공사 및 주내 ~ 가남간 도로확포장등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간접 시설이 현재 확충되고 있고 통일을 대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행정구역개편은 반드시 지양되어야겠으며, 우리 양주군은 행정구역개편 및 통합에 전 의원은 물론 10만 군민 대다수가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전원 도시로 발전케 함이 바람직 하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 [ 3 ]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3. 14.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1.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협의회를 둔다. (안 제1조)
2.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
3. 기능 (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 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 (안 제8조)

####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제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 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4 】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3. 3.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